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국 방 송 공 사 법 안 검 토 보 고

<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별도의 법 제정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4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	2
1. 한국방송공사 관련 방송법 등 연혁	2
2. 제정안의 구성체계	4
3. 총괄 검토의견	6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2
IV. 주요 내용별 검토	13
1.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7조까지)	13
2. 제2장: 이사회(제8조부터 제11조까지)	24
3. 제3장(1): 집행기관(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31
4. 제3장(2): 업무(제17조)	38
5. 제4장: 회계(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48
6. 제5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와 징수(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54
7.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6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6. 18.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총괄 검토

1. 한국방송공사 관련 방송법 등 연혁

- 현행 「방송법」은 舊방송법, 舊중합유선방송법, 舊유선방송관리법, 舊한국방송공사법 등 4개의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2000년에 제정¹⁾한 법률로, 흔히 ‘통합방송법’으로 불림.
- 즉,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인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현재의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었고, 방송법 내 별도의 장(제4장, 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을 두어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KBS를 제외한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주)문화방송(MBC)의 최대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²⁾을 독자적인 근거법률로 가지고 있음.
 - EBS의 경우, KBS 3TV로 운영되던 교육방송이 1990년 KBS로부터 분리되어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설 교육방송으로 변경되었고, 1997년 「한국교육방송원법」 제정³⁾으로 한국교

1) 법률 제6139호 (2000.3.13. 시행)

2)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근거인 「방송문화진흥회법」를 통해 간접 규율됨.

3) 법률 제5273호 (1997.1.13. 시행)

육개발원으로부터 독립된 방송기관으로서 ‘한국교육방송원’이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2000년 「한
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⁴⁾과 함께 EBS가 공사로 전환된 이
후 현재까지도 해당 법률이 근거 법률로 작용하고 있음.

-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이후 KBS가 소유하던
MBC의 지분(70%)를 출연받을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고자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제정⁵⁾되었고, 방송문화진흥회
및 MBC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유지되고 있음.

○ 이와 달리 KBS는 독자적인 근거 법률 없이 관련 규정이 「방
송법」에 포함되어 있는바, KBS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근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어 왔음.

4) 법률 제6136호 (2000.3.13. 시행)

5) 법률 제4032호 (1988.12.26. 시행)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제명은 「한국방송공사법안」으로, 본칙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KBS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4장(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제1장(총칙), 제2장(이사회), 제3장(집행기관), 제4장(회계), 제5장(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와 징수)의 5개 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각 조문별 토대가 된 「방송법」 조항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한국방송공사법안」 및 「방송법」 간 조문 비교 >

한국방송공사법안		조 제목	방송법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4장 한국 방송 공사	제43조①	설치등
	제2조	법인격		②	
	제3조	사무소		③④⑦⑧	
	제4조	자본금		⑤⑥	
	제6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5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제2장 이사회	제8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	이사의 임기 및 퇴임		제47조	이사의 임기
	제10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11조	이사의 책임 및 이사회의 기능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	집행기관		제50조	집행기관
	제13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0조의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4조	집행기관의 직무 등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52조	직원의 임면
	제16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7조	업무		제54조	업무

한국방송공사법안		조 제 목	방송법	조 제 목	
제4장 회 계	제18조	회 계 처 리	제4장 한 국 방 송 공 사	제55조	회 계 처 리
	제19조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5조의2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20조	재 원		제56조	재 원
	제21조	예산의 편성		제57조	예산의 편성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23조	결산서의 제출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24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25조	보조금 등		제61조	보조금 등
	제26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27조	감사		제63조	감사
제5장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	제28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29조	수신료의 결정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제30조	수신료 등의 징수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제31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32조	수신료의 사용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3. 총괄 검토의견

가.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 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최근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의 진흥·발전과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KBS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려는 제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본회의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3건⁶⁾이 KBS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방송법」 중 KBS 관련 내용의 개정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MBC의 최대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으

6) 제21대 국회 기준 본회의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 10건 중 2건이 KBS에 관한 건이었고, 제20대 국회에도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4건 중 1건이 KBS에 관한 건이었음.

로서의 KBS의 역할과 중요성, 위상을 고려할 때 KBS만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KBS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 강화가 반드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KBS 관련 사항을 단순히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는 것에 그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상징성 이상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보임.

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의 체계 정합성 검토

- 동 제정안은 함께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의결 및 「방송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의 체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첫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방송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동 제정안의 제명 및 KBS의 명칭에 방송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포함된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서 방송의 정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체계상 방송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 제정안의 제명 및 KBS의 명칭(한국방송공사)에 방송이라는 표현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에는 방송서비스, 방송프로그램,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방송광고 등의 표현이 활용되는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따르면 해당 표현들이 더 이상 정의되거나 활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시청각미디어광고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동 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모두 KBS 관

런 벌칙 및 양벌규정을 누락하고 있는바, 「방송법」에 규정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동 제정안에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KBS
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⁷⁾
- 그러나, 동 제정안이 KBS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만을 승계
하면서, 동 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모두 그 벌칙
및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벌칙 규정이 부재할 경우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단순 선언적 규
정에 그칠 소지가 있으므로, 종전 존재하던 벌칙 부과 근거 및
양벌규정을 둬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보다는 실체법적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동 제정안이 「방
송법」 규정을 승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셋째, KBS가 부과·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텔레비전방송수

7) 「방송법」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료(수신료)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안」 중 어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 「한국방송공사법」은 제35조부터 제39조에서 수신료 납부의무자, 수신료의 결정·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들은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로 승계되었음.
- 동 제정안은 수신료 관련 규정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아닌 동 제정안의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방송법」 제68조 및 안 제32조에 따르면 수신료 일부가 공영방송인 EBS의 재원으로 지원되는바, 공영방송 전반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수신료 관련 규정을 공영방송의 근거 법률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대신 동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BS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KBS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⁸⁾을 고려할 때,

8) 1999.5.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3.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중 략) 그리고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수신료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에 규정한 것은 수신료의 의미를 KBS의 방송 용역에 대한 대가로만 축소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규정하도록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수신료 관련 사항이 「舊한국방송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KBS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1차로 결정하며, 국회 승인으로 결정된 수신료는 KBS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해당 절차를 동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신료 관련 규정의 입법 방식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임.

- 본 제정안은 「방송법」을 폐지하면서 KBS 관련 규정을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인 만큼, 이하에서는 제정법률안을 기존 「방송법」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중심으로 조문별로 비교 검토하고자 함.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KBS에 관한 사항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KBS의 법적 지위와 공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KBS: 수정 수용)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헌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그 역할에 요구되는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며, 수신료 등에 관하여 공사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찬성함.
- (EBS: 신중검토) EBS에 대한 KBS의 송신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송신과 관련된 제반사항 전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는 KBS만의 재원이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이므로, 관련 규정은 「한국방송공사법」이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IV.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의 목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의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의 기재사항, 공사의 공적 책임,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화한 것임.

「방송법」	제 정 안
제43조(설치등) ① <u>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u> 국가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u>국가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방송법」	제 정 안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u>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u>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u>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u>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 「<u>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u>」 제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u>공정성과 공익성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u> ② 공사는 국민에게 <u>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③ 공사는 국민에게 <u>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및 <u>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공사는 <u>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기</u>

「방송법」	제 정 안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u>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u>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u>한국문화의 창달과 발전,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⑦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	제5조(정관의 기재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 등 회계에 관한

「방송법」	제 정 안
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u>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KBS의 설치 목적, 공적 책임, 정관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토대로 하되,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법에 규정하고, 다양한 공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정안은 KBS의 공적 책무로서 공정한 뉴스와 정보 제공(제6조제2항),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 제공(제6조제3항),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제공(제6조제4항), 한국문화의 창달과 발전,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제6조제6항) 의무를 열거하고 있음.
- 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함.
- 이는 「방송법」 제1조에 따른 법 제정 목적, 현행 제43조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방송법」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제정안 제6조는 「방송법」과 달리 KBS가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 및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KBS 총수입의 49.8%를 차지하는 수신료가 법령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에서 KBS가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관련 역할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방송(재

난방송등)을 하도록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KBS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KBS는 전담부서를 두고 재난 감시 CCTV 확보, 뉴스특보, 재난재해 사전예방 스포츠,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방송을 위해 2026년 기준 107억원의 자체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법」 및 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의 책무 및 업무 범위에 재난방송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KBS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과 「한국방송공사법안」¹¹⁾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10) 의안번호 제2117873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2.10.20.)

11) 의안번호 제2119029호,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12.20.)

의안번호 제2121338호,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3.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송공사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송공사법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③ 공사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 책임) ④ 공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 책임) ⑤ 공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둘째, 제정안에서 신설되는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 금지의무에 대응되는 벌칙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BS와 같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설을 통해 사칭 등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KBS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 사례¹²⁾와 같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벌칙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과태료 등)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벌칙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수정 동의)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그 역할에 요구되는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세부적으로는 안 제3조(사무소) 및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정안 제3조제2항은 「방송법」 제43조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미통위인가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지역방송국 개편이 용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6조제8항은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사용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는데, 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에 「정부기업 예산법」을 준용하고 있고(안 제18조제2항),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와 수당 등은 공개되며(안 제19조), 매년 결산서가 감사원 검사와 국회 승인을 거친다는 점(안 제23조)을 고려할 때 중복 규정의 실익이 낮음.
- KBS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바, 재난방송 관련 책무를 공적책무에 추가 규정하며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나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도달률 제고를 위하여,
공적 책무를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제2장: 이사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2장은 KBS의 이사회에 관한 것으로서 KBS 이사회 구성, 이사의 임기·결격사유·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와 같음.

「방송법」	제 정 안
제46조(이사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	제8조(이사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

「방송법」	제 정 안
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천하여 결정한다. $\text{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6 \times \frac{\text{해당 교섭단체 의석수}}{\text{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	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천하여 결정한다. $\text{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6 \times \frac{\text{해당 교섭단체 의석수}}{\text{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

「방송법」	제 정 안
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⑦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⑧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 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⑦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⑧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방송법」	제 정 안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⑪ 이사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 이사회 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	⑩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⑪ 이사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 이사회 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이사의 임기 및 퇴임)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

「방송법」	제 정 안
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	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

「방송법」	제 정 안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의 책임 및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10.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1.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2. 손익금의 처리 13.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4. 정관의 변경 15.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KBS 이사의 추천 및 구성 방법, 임기, 이사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를 바탕으로 함.
- KBS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수를 11인에서 15인으로 증가시키고, 종전 방통위로 한정되었던 이사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관련 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한 바 있는데, 본 제정안은 해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3. 제3장(1): 집행기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3장은 KBS의 집행기관에 관한 것으로서 KBS 집행기관인 사장·부사장·본부장·감사의 임명,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원의 임면 및 임직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방송법」	제 정 안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집행기관) ① 공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 정 안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	제13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

「방송법」	제 정 안
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방송법」	제 정 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KBS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를 두도록 하고, 집행기관의 직무 등을 규정하는 「방송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KBS 사장 추천 절차과 관련하여, 지난 2025년 8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제정안이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6조제3항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있지 아니한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105조제4호¹³⁾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밀유지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

13) 「방송법」

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를 위하여 제정안에도 벌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KBS 또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 동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KBS 이사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대상에 이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KBS: 수정 필요) 이사가 이사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득한 고도의 경영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불명확한 사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임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¹⁴⁾ 및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¹⁵⁾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밀유지의무대상에 이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14)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판결요지]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후 략)

15) 「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장(2): 업무 (제17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3장 중 제17조는 KBS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5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안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u>라디오방송</u>의 실시 2. <u>텔레비전방송</u>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	제17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텔레비전방송</u>의 실시 2. <u>라디오방송</u>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u>남북교류방송</u>,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u>국제방송</u>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

「방송법」	제 정 안
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17조는 KBS 소관 업무와 이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5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KBS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텔레비전·라디오·위성방송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동 제정안은 함께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의결 및 「방송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의 체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그런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¹⁶⁾은 「방송법」¹⁷⁾과 달리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텔레비전·라디오·위성방송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청각미디어”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공영방송서비스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경우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이하 “라디오방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라디오방송을 엄밀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을 라디오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 둘째, KBS의 업무 범위로서 대외방송, 남북교류방송,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법」은 KBS의 업무 범위로서 대외방송¹⁸⁾, 사회교육방송¹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제정안 제17조 제1항제5호는 남북교류방송과 국제방송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대외방송, 남북교류방송,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방송 실시 업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바,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국가 보조금의 교부·집행 기준이 모호해지고 국고 지원의 투명성 및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KBS는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을 근거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5)’ 사업을 통해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25년 기준 62.7억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음.
- 우선 사회교육방송의 경우, ① 1972년부터 사용되던 ‘사회교육방

18)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19)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

송’ 명칭이 2007년 ‘한민족방송’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으로 KBS는 ‘한민족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점, ② 제정안은 「방송법」과 달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사회교육방송의 개념과 목적을 KBS 운영 실태 및 제정안 입법 취지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제 정 안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u>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u>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u>한국문화의 창달과 발전,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 한편, 제정안에 신설되는 남북교류방송과 국제방송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종전 KBS의 업무 범위인 대외방송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KBS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제방송의 제작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외방송과 국제방송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EBS의 UHD 송출 지원과 관련하여, EBS의 방송 송신 지원에 대한 KBS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1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 도입이 결정²⁰⁾되고, 2016년 11월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상파 UHD방송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현재 KBS·MBC·SBS와 달리 EBS의 UHD방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UHD방송을 위하여는 송출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규모의 송신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2016년 12월부터 UHD 장비와 시설 인프라 투자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KBS와 EBS가 협의를 진행해왔음에도, 지상파방송의 경영난 가중으로 양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EBS의 지상파 UHD방송 허가 심사 시 송신설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EBS의 UHD방송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

 - EBS는 ① 「방송법」 제54조제1항제6호를 EBS가 행하는 UHD방송의 모든 송신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② HD방송의 경우에도 KBS가 송신설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 KBS는 ① 기본적인 송신지원을 넘어 EBS가 행하는 모든 송신 및 송출에 대하여 KBS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20)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5.12.)

과잉 해석이고, ② UHD와 같은 신기술 도입 시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며, ③ 1,000억원 이상의 초기 투자비와 연간 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는 EBS의 UHD 송신을 KBS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정부는 KBS와 EBS의 UHD방송 송신지원 관련 합의 유도를 위해 ① 2016년부터 9년간 총 13회의 협의를 진행²¹⁾하였고, ② 2017년 3월 KBS가 EBS의 송신 비용 일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대한 논의²²⁾ 중 방통위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의 근거를 두기로 하였으며, ③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KBS의 EBS 송신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²³⁾하였으나, 각각 임기만료폐기되었고, ③ 2023년 KBS UHD방송국 재허가 및 2024년 EBS DTV방송국 재허가 시 양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각각 부과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미디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지상파 차세대 UHD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1) 2016~2017년 중재 5회, 2020~2021년 회담 4회, 2022~2023년 협의회 4회 개최

22)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16차 전체회의, 2017.3.24.

23) 의안번호 제2023020호 (2019.10.25.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01772호 (2020.7.10. 정부제출)

< EBS UHD방송 송신 지원을 위한 「방송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제2023020호, 의안번호 제2101772호)
제54조(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4조(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방송의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BS의 UHD 전환을 위해 2017년 이후 10년간 약 174억원의 국가 재정과 169억원의 EBS 자체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EBS는 UHD장비를 활용해 제작한 UHD콘텐츠를 화질을 낮춰 HD방식으로 송출만 하고 있을 뿐, UHD방송 송출 실적은 전무함.
- 따라서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통위가 연중 마련 예정인 지상파 UHD방송 정책방안을 토대로 KBS와 EBS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KBS 업무 중 ‘EBS의 방송 송신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 필요) 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정안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존재하지 않는 텔레비전·라디오·위성방송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 구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KBS: 수정 필요) KBS는 제정안이 정하는 업무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공사 업무에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의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망 기술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OTT 매체 신뢰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며, 시청자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성을 가지는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계방송권 구매 및 중계방송 실시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KBS가 국군방송, 대북방송 등의 송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정안에 명시하고, 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대외방송, 사회교육방송 등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KBS가 제작·송출하고 있는 채널이므로, 안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수정이 필요함.

- (EBS: 수정 필요) EBS의 UHD 송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KBS의 업무 범위 중 EBS에 대한 방송 송신 지원 업무(안 제17조제1항제6호)의 범위를 ‘송신 관련 제반사항 전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제4장: 회계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4장은 KBS의 회계에 관한 것으로서 KBS 회계처리, 재원, 예산 편성, 결산서 제출, 보조금, 물품구매·공사계약 위탁, 회계감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6조부터 제63조까지와 같음.

「방송법」	제 정 안
제55조(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	제20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2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

「방송법」	제 정 안
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사의 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정 안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방송법」	제 정 안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사의 감사</u>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u>가 이를 실시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나. 검토의견

- 「방송법」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6조부터 제63조까지는 KBS의 재원, 예산 편성과 결산서 제출의무,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대체로 「방송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내부감사 주체가 「방송법」에서는 KBS 집행기관인 감사로 한정되는 반면, 제정안 제27조제2항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 다만, 「상법」 제415조의2²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는데, 제정안은 제12조에서 감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주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병존이 일반적으로 어려운바,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집행기관으로서 감사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24)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수정 필요) 안 제20조에서 공사의 경비 중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외의 수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공사의 수신료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송출대행료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27조제2항은 공사 내부감사의 주체로 감사위원회를 추가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정원·선임방법·권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아니함에 따라 운영상 혼선과 책임소재 불명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6. 제5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와 징수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5장은 KBS의 수신료에 관한 것으로서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수신료의 결정·징수·징수위탁·납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음.

「방송법」	제 정 안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u>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u> 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u>텔레비전수상기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이하 “수상기”라 한다)</u> 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29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제30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29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할 때

「방송법」	제 정 안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9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u>시·도지사</u>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	제31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

「방송법」	제정안
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는 KBS 재원인 텔레비전수신료의 결정, 징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전에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지정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결합하여 행하고 있었으나(수신료 통합징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634호)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4월 「방송법」이 개정되며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개되었음.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16751호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령 제33634호 (대통령령 제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7.12.)	대통령령 제36355호 (현행, 2026.5.26.)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② 지정받은 자 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 지행위와 <u>결합하여 이 를 행할 수 있다.</u>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② 지정받은 자 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 지행위와 <u>결합하여 이 를 행하여서는 안된다.</u>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② <삭제>

< 「방송법」 제67조 개정 연혁 >

법률 제17347호 (법률 제2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952호 (현행)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한편, 본 제정안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여 「방송법」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안 제28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 대상으로 종전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더불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를 소지한 자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²⁵⁾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공사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25) 헌재 1999.5.27. 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납부의무자의 범위는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특별히 긴밀한 관련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바, ①수신료의 납부의무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②공영방송의 시청,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③또한 이러한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저야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④수신료 수입이 결국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들과 수신료를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 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를 소지한 자’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밀접성, 집단적 책임 등을 기준으로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와 ‘특별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즉,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는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로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와 ‘특별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동 제정안이나 제정안의 전제가 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는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 또한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제정안은 함께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의결 및 「방송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의 체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라디오방송만 약칭하고 있을 뿐 텔레비전방송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1. “ 방송 ”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	1. “ 시청각미디어 ”란 「전파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지 또

「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u>텔레비전방송</u>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u>라디오방송</u>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u>데이터방송</u> : (생략) 라. <u>이동멀티미디어방송</u> : (생략)	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공영방송서비스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경우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이하 “<u>라디오방송</u>”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정안과 같이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수신료 납부대상인지에 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하위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한 해석을 두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음.
- 따라서, ‘텔레비전수상기’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텔레비전방송 수신기기 소지자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특별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텔레비전방송 수신기기 소지자를 실무적으로 구분하

여 현행 통합징수·고지 체계 하에서 수신료 부과·징수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수신료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중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⁶⁾

26) 이와 관련하여는 본 검토보고서 10p 참고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 검토)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정의 없이 텔레비전방송 수신기기 소지자를 납부의무자로 추가할 경우 수신료 납부의무자 범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텔레비전방송수신기기의 범위를 해석할 때 ①시청각미디어서비스 수신기기로 넓게 해석할 경우 이용계약 기반의 유료 OTT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기존 지상파방송서비스 수신기기로 축소해석할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달리 기존보다 수신료 납부 대상이 축소될 수 있음.
- (KBS: 수정 필요) 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에 OTT나 인터넷 스트리밍이 가능한 전송 개념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신기기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에 국한할 게 아니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 (EBS: 신중 검토)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에 해당하며, KBS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²⁷⁾을 고려할 때, 수신료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에 규정한 것은 수신료의 의미를 KBS의 방송 용역에 대한 대가로만 축소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규정하도록 이동할 필요가 있음.

27) 1999.5.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3.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중 략) 그리고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7.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부칙은 제정법률안의 시행일, 종전의 KBS에 관한 경과조치, KBS를 규정하고 있던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
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부칙은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KBS를 인용하는 타 법률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혼란과 법체계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²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²⁹⁾도 「방송법」 제43조와 제68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변경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 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부 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u>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0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43조”를 “「한국방송공사법」”으로 한다.</u> <u>④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9조제2호 중 “「방송법」 제68조”를 “「한국방송공사법」 제28조”로 한다.</u>

문 의 처

02)6788-5226